

## 위임계약서(전문)

### 당사자의 표시

의뢰인(갑)	[ ]
수임인(을)	아래 수임인(을) 기재와 같음

### 사건의 표시

사건명	[2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원고)	[ ]	상대방(피고)	삼성물산(주) 외 다수

갑과 을은 위 사건의 소송 등 사무처리 위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내용]

- ① 갑은 을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 등 사무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 ②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갑은 별도로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수여한다.

## 제2조 [위임 한계 및 수권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 일체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구체적인 소송 방식 및 시기, 선정당사자 선정, 피고 선정, 상소 여부, 보전처분 등은 갑의 이익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인 판단에 맡긴다).

② 갑은 을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각 호와 같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1. 일체 소송행위(민사소송 신청 포함), 보전처분 제기, 반소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 화해, 소 취하, 청구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 선임, 목적물 및 판결금(화해금, 조정금 포함) 수령, 공탁물 납부, 공탁물 및 이자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 제기 및 수행,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소송비용 수령, 강제집행 등 일체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상기 행위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일체 행위

## 제3조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본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본안 1~3심 전체의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구 삼성물산(주) 1주당 2,000원(착수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으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갑 소유였던 구 삼성물산(주) 주식의 수가 1만주 이상인 경우 소송비용과 착수보수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 삼성물산(주) 1주당 금액은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항의 지급금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 및 감정료, 증인 여비, 교통 및 통신시설 이용비, 예납금, 보정금, 자료수집비, 복사비, 기타 필요한 실비(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로 한다.

만일 을이 전항의 지급금으로 소송비용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사무 처리 결과에 따라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전항 전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충당(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착수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처리하기로 한다.

④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 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 사망 등의 경우 모두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제12조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기로 한다.

⑥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본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4, 5항에서 열거한 이외의 사유로 위임사무가 도중에 종결된 경우에는 을은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복대리인 변호사 포함)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위임사무를 준비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갑의 부담 부분을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에서 공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갑에게 반환한다.

#### 제4조 [성과보수]

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 금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과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지급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1주당 금액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 성공보수도 달라질 수 있다.**

1. 본안소송 제기 전 단계부터 1심 판결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의 5%

2. 2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의 7%

3. 3심이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의 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전항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2. **을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판결 확정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이** 승소한 후 상급심에서 **을에게** 계속 위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소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성과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갑은 승소 시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등에 대한 변제 수령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1.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과보수금 및 을이 제시하는 제3조 제2항 후문에 의한 추가 소송비용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2.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과보수금 및 제3조 제2항 후문에 의한 추가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⑤ 제2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익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간주하여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위임 취지에 따라 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 [통지의무]**

① 을은 위임사무 처리 중 중요한 내용이나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본 위임계약 체결 당시 갑이 을에게 알려준 연락처로 하며,

갑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을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을은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중요사항의 결정]**

① 을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 등 수락여부, 소송 취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갑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소송을 위임한 전체 피해자들 중 동의 여부를 밝힌 사람의 과반수 및 을에게 소송을 위임한 전체 피해자들 주식수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전체 피해자들에 을에게 소송을 위임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의 수가 1만주 이상인 법인인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을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한다.

#### **제9조 [자료제공 등]**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서류 및 자료,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결된 때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6개월 내에 갑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제10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급보장]**

① **을**은 본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전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갑**이 본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본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인장조각]** 본 위임계약의 수행상 위임장 작성 등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인장의 조각은 **갑**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제공 동의]** **갑**은 **을**이 제1조(계약 내용) 및 제2조(위임 한계 및 수권 범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3.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서초동, 성재빌딩)

변호사 최 덕 현



### 4. 법률사무소 휴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4층(서초동, 골드빌딩)

변호사 김 종 보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원 제출용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등 발송,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용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간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의 내용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별지 1] 수입인 명단

### 1. 법무법인 지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8층(서초동, 서희타워)

대표변호사 남 상 철



### 2. 법무법인 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소성로 153, 205호(학익동, 중앙빌딩)

대표변호사 권 원 현



### 3.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서초동, 성재빌딩)

변호사 최 덕 현



### 4. 법률사무소 휴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4층(서초동, 골드빌딩)

변호사 김 중 보

